(2019 – 04호)

건강한 금융생활정보 가이드

KEB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

목차(CONTENTS)

1.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
2.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 광고를 조심하세요
3. 안전한 P2P 투자를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
4. 화폐 관련 법령 및 위조지폐 발견시 처리요령
5. 숨은 금융자산 찾기 안내

※ 자료 출처 : http://www.fss.or.kr

KEB 하나은행

1.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감독원의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 례

- (사례1) 대학원생 A씨는 친구로부터 ○○ 카드가 연회비도 저렴하고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는 이야기만 듣고 동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던 중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50만원 이상의 전월 이용실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됨. 그러나 자신의 수입으로 월 50만원 이상 결제하는게 쉽지 않아 포인트를 적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어 카드 발급신청 시 잘 알아보지 않은 것을 후회함.

- (사례2) 결혼예정자인 B씨는 결제금액의 3% 포인트가 적립되는 △△카드로 백화점에서 200만원짜리 침대를 3개월 무이자할부로 구입한 후 6만 포인트 적립을 기대하였음. 그러나 실제로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아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무이자할부는 포인트 적립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사례3) 자영업자 C씨는 카드사로부터 며칠 내로 9,000포인트가 소멸될 예정임을 안내 받고 소멸예정포인트가 아까워 본인의 돈을 보태어 카드사 포인트 쇼핑몰에서 급하게 티셔츠를 2만원에 구입함. 이후 1포인트가 남았더라도 카드사 앱 등을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급하게 물건을 구입한 점을 후회함.

- (사례4) 직장인 D씨는 4장의 카드를 사용중인데 최근 ㅁㅁ카드사 콜센터에 포인트를 조회해 본 결과 ㅁㅁ카드로 그동안 10만 포인트가 적립되었으나 2만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여 지난달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D씨는 그동안 각 카드사마다 포인트를 확인해 보는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여 포인트 관리에 소홀했으나,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카드사별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을 통합조회 하는 것이 가능하고 매달 받고 있는 카드대금명세서에서도 소멸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됨.

※ 카드 포인트를 잘 이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알아두세요.

① 카드 선택시 포인트 적립률 이외에 포인트 적립조건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②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③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며 국세납부,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④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세요.

⑤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 등에서 한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① 카드 선택시 포인트 적립률 이외에 포인트 적립조건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 카드 포인트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해 제공됩니다. 또한, 카드 상품별로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따라서 소비자는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하기 보다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한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A카드 : ① 전월 이용실적 기준 50만원 ② **포인트 적립률 3%** ③ 월 적립한도 1.8만
B카드 : ① 전월 이용실적 기준 30만원 ② **포인트 적립률 2%** ③ 월 적립한도 2만
(전월 이용실적 제외항목 및 포인트 적립 제외항목은 없는 것으로 가정)

- **30만원** 이용시 **B카드 유리** (A카드 포인트 없음, B카드 0.6만 포인트)
- **50만원** 이용시 **A카드 유리** (A카드 1.5만 포인트, B카드 1만 포인트)
- **100만원** 이용시 **B카드 유리** (A카드 1.8만 포인트, B카드 2만 포인트)

②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통상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며, 카드 상품별로 제외 항목이 다르니 소비자는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동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이자 할부" 결제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카드 이용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며 국세납부,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 소비자는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휴대폰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금융결제원 운영)를 통해 보유 포인트로 국세도 납부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세요.

-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명세서상 포인트 내역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카드 해지시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되므로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잔여 포인트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미상환 카드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해지 신청시 카드사는 유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포인트 사용 절차를 안내함

⑤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 등에서 한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또는 여신금융협회 조회 시스템(www.cardpoint.or.kr)에서 카드사별로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 조회화면에서 바로가기 클릭으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이용절차</u>

※ 자료 출처 : http://www.fss.or.kr

2.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 광고를 조심하세요!

1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배경

❑ 해외송금 알바 모집을 가장하여 사회초년생, 자금이 필요한 구직자를 상대로 고액 수당을 제시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가담하도록 유인

□ 최근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또는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구직자들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하였다가

□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되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

2 보이스피싱 수법

□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 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알바 모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게시

□ 이를 보고 연락 온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해 주고

□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계좌)에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

□ 연간 5 만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 및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

3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

①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

- 송금·환전·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구매·결제대금 등 사업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 유의

② 채용상담·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SNS*** 등으로 연락하라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통장·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

* 일반적으로는 채용·구직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서·이력서 등을 접수

※ <붙임>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한 사례

해외송금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한 사례

□ 회사원 P씨(36세, 남)는 '19.10월초 해외 구매대행업체에서 **해외송금을 대행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모바일 메신저ID로 연락

- 이 업체의 외주사업팀장이라고 소개한 불상의 K씨는 P씨에게 "구매자들로부터 수금한 구매대금을 P씨의 계좌로 보내줄테니 구매결제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업체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고 설명

- 또한 "우리 업체는 해외송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므로, P씨에게 책임은 없을 것"이라며 안심시킴

P 씨가 받은 문자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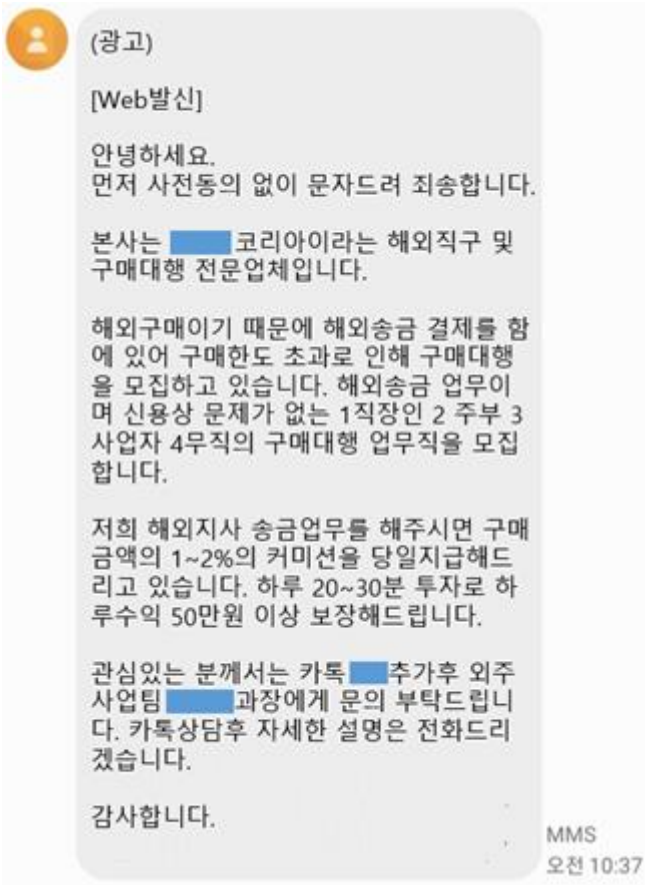
(광고)

[Web발신]

안녕하세요.
먼저 사전동의 없이 문자드려 죄송합니다.

본사는 [redacted]코리아이라는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전문업체입니다.

해외구매이기 때문에 해외송금 결제를 함에 있어 구매한도 초과로 인해 구매대행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외송금 업무이며 신용상 문제가 없는 1직장인 2 주부 3 사업자 4무직의 구매대행 업무직을 모집합니다.

저희 해외지사 송금업무를 해주시면 구매금액의 1~2%의 커미션을 당일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20~30분 투자로 하루수익 50만원 이상 보장해드립니다.

관심있는 분께서는 카톡 [redacted]추가후 외주사업팀 [redacted]과장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카톡상담후 자세한 설명은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MS
오전 10:37

□ P 씨는 업체명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해외대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수상하다고 여기면서도 송금액의 2%, 일당 50 만원 보장에 현혹되어 제안을 수락

- P 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900 만원을 모바일 뱅킹 앱으로 캄보디아 현지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다음날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됨

※ 자료 출처 : http://www.fss.or.kr

3. 안전한 P2P 투자를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

❑ '19.10.31. P2P대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1월중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20년 하반기 본격 시행될 예정

❑ 다만, P2P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연체율 상승 등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투자를 당부드림

-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될 경우 그간 고수익을 안겨주었던 투자에서 다수의 회수 지연 및 손실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금감원은 '18년 대규모 실태조사 이후 올해에도 현장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4개 P2P업체(연계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등 조치하였음

  * 주요 적발사항은 ①허위공시, ②차주의 계약서 위·변조, ③대출실적 부풀리기 및 연체율 축소, ④부실 대출심사 등임

❑ P2P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P2P대출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드리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림

P2P 대출 투자자 유의사항

1. P2P 업체 선택 단계

①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 P2P 상품 투자자는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연계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 http://fine.fss.or.kr(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접속 → "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

②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에 대한 투자는 각별히 유의

○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능력보다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으며, 회사의 재무상황 악화 및 대출 부실화 가능성도 높음에 유의

③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와 투자금 입금계좌 예금주를 확인할 필요 → 향후 법 시행시 의무화

○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은 P2P 업체의 파산.해산시 제 3 자의 가압류 등으로부터 투자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방식

○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도입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금 입금시 P2P 업체 또는 임직원 명의 계좌가 아닌 **본인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되는지 확인할 필요

④ P2P 업체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확인해 볼 필요

○ P2P 업체는 금융기관보다 전산시스템 운영수준이 미흡하여 해킹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전산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웹 취약점 점검 여부, 암호화 프로토콜(https* 등) 사용 여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PIMS) 등을 확인하여 보안 수준이 높은 업체를 선택

* 기존 홈페이지 통신 프로토콜인 http 보다 보안이 강화된 버전으로 데이터가 암호화됨에 따라 금융거래, 전자상거래 등에 널리 쓰이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심사를 신청하고 인증기관(KISA)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2. P2P 대출 투자 단계

⑤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임에 유의

○ P2P 상품은 차입자 채무불이행시 투자자에게 손실이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에 투자금 회수도 보장되지 않음

○ 일부 P2P 업체는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P2P 업체의 손실보전 재원이 충분하지 않음에 유의

⑥ 부동산 PF 상품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

○ 부동산 PF 대출은 빌라, 다세대 등의 건축자금에 대한 대출로서 복잡한 사업구조, 다수의 이해관계자, 시행사 등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리스크가 높은 상품

○ 일반적으로 건축예정 토지가 담보로 설정되거나 담보 없이 PF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 하락시 자산가치 하락 또는 미분양 사태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

○ 따라서, 투자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의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입지조건 등을 확인

* 담보물의 경매처분,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채권 매각 등

<참고> 부동산 PF 상품 투자시 고려사항

▣ P2P 업체를 통해 부동산 PF 상품 투자시, 리스크 요인을 꼼꼼히 따져야 함

① 채무상환에 책임을 지는 차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비율과 자금출처(타기관 대출여부)를 확인

② 대출목적(토지잔금, 공사비, 홍보비, 기타 부대비 등)이 명확한지,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출자금 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

③ 금융권 대출의향서는 대출 승인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시 유의

④ 시행사·시공사는 사업시행 및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주체인 만큼, 신용등급, 사업시행이력, 재무현황 등을 확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 **"P2P 대출을 통해 부동산 PF 상품에 투자시 리스크 요인을 반드시 점검하세요"**('17.9.22.) 참조

⑦ 자산유동화대출의 우선수익권 교부순위를 반드시 확인하되, 담보권으로서 효력은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

○ 대부분 후순위(금융권 대출·시공사 공사대금 등이 선순위)대출로서,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으로서 효력은 제한적

* 일반적으로 P2P 업체가 공시하는 LTV 는 우선수익권 확보 금액 대비 대출예정금액 비율로, 토지·건물 감정평가금액 대비 대출예정금액이 아님에 유의

○ 미분양 등 사업실패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며, 부동산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한 대출임을 유의

⑧ 만기 연장 또는 재대출되는 방식의 투자상품인지 확인

○ 신규 상품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실질은 **투자자를 재모집**하여 만기연장 또는 재대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PF 사업** 또는 **차입자**의 **부실** 등을 **이연**시킬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차입자의 대출만기와 투자 상품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돌려막기 영업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

○ 투자 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동일차주 대출 현황**, **만기연장** 또는 **재대출 여부**, **대출만기일자** 등을 확인

3. P2P 대출 투자 완료 이후 단계

⑨ 부동산 관련 P2P 대출 투자 이후에는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

○ P2P 업체의 공시사항을 참고하는 한편, 등기부등본 조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할 필요

※ 자료 출처 : http://www.fss.or.kr

4. 화폐 관련 법령 및 위조지폐 발견시 처리요령

다양한 첨단 위조방지장치 도입 및 화폐의 위조행위에 대한 무거운 형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화폐위조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법령과 위조지폐 발견 시 처리요령을 알려드립니다

1 화폐 관련 법령

▣ 돈으로 쓰기 위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돈으로 쓰기 위해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외 화폐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수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①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위·변조된 화폐에 대한 집중관리 권한은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 「한국은행법」제49조의2 (위조·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관리) ① 한국은행은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을 한국은행에 집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동전을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한국은행법」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 「한국은행법」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위조지폐 발견 시 처리요령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

한국은행본부	02) 560-1604, 02) 560-1607	대전충남본부	042) 601-1160	경남본부	055) 260-5161
부산본부	051) 240-3875	충북본부	043) 220-0585	강릉본부	033) 640-0172
대구경북본부	053) 429-0364	강원본부	033) 258-3336	울산본부	052) 259-7439
목포본부	061) 241-1133	인천본부	032) 880-0063	포항본부	054) 289-2924
광주전남본부	062) 601-1146	제주본부	064) 720-2542	강남본부	02) 560-1219
전북본부	063) 250-4125	경기본부	031) 250-0130		

<경찰서>

전화	112	인터넷	minwon.police.go.kr

※ 자료 출처 : http://www.bok.or.kr

5. 숨은 금융자산 찾기 안내